#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남선준

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수실 오병한

- 제·개정 경과
- 2012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6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Guidance Construction: 1) Health and Safety in Construction
  - 2) Managing Health and in Safety in Construction
  - 3) Safe Erection, Use and Dismantling of Falsework
  - 4) 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
  - 5) Safety working at woodworking machine 1992
  - 6) Top tips for ladder and stepladder safety 2005
- BS: 1) Code of practice for selection, use and maintenance of personal fall protection systems and equipment for use in the workplace
- ANSI: 1915.133 Hand tools.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~ 제68조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 및 제301조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6조
-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48호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경량철골 천장, 벽체 칸막이 작업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(추락), 물체에 맞음(낙하), 넘어짐(전도), 감전, 베임,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등 건강장애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·보건사항 및 안전·보건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천장, 내부 벽체 마감 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에 적용하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천장 작업"이라 함은 건축마감공사 중 반자의 겉면을 마감하는 작업을 말하다.
- (나) "내부벽체 작업"이라 함은 건축마감공사 중 내부벽체에서 시공되는 단열재, 석고보드 등의 작업을 말한다.
- (다) "달대"라 함은 천장에 매다는 환봉(전산볼트)을 매달아 행거(Hanger)를 걸어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(라) "달대 받이"라 함은 텍스를 붙이기 위해 가로로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.
- (마) "달대 볼트"라 함은 달대(전산볼트)와 행거(Hanger)를 연결하기 위한 볼트를 말한다.
- (바) "캐링채널(Carrying Channel)이라 함은 달대 볼트와 달대 걸이에 고정 하여 설치하며 바(Bar) 받이를 위한 지지대를 말한다.
- (사) "방화 석고보드"라 함은 불연 특성을 갖는 석고에 무기질 섬유를 보강시켜 내화 성능을 향상 시킨 석고보드(KSF-3504)를 말한다.

- (아) "런너 스터드 트랙(Runner Stud Track)" 이라 함은 경량 강재 밑막이 및 웃막이(KSD-3609)를 말한다.
- (자) "스터드(Stud)" 라 함은 경량 강제 샛기둥(KSD-3609)을 말한다.
- (차) "스페이서(Spacer)" 라 함은 Stud 고정용(밀림방지) Clip을 말한다.
- (카) "코너비드(Corner Bead)" 라 함은 석고판 코너 마감재를 말한다.
- (타) "내화 실란트(Sealant)" 라 함은 조절 줄눈 및 벽 접합부위 마감용 재료로 내화 성능을 가지는 실란트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고용노동부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안전·보건작업계획 수립

- (1) 내장공사 작업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,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 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
- (2) 작업의 높이에 따른 작업발판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전기기계 · 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4)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소운반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.
- (6) 각 작업 단위별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순서와 방법, 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.
- (7) 안전보호구 지급계획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, 방진마스크, 보안면, 귀마개 등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8)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2시간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휴식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9)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, 마감 재료에 따른 유해·위험성을 검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 5. 안전작업 공통 사항

(1)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, 화재 예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1> 작업 전 근로자 교육

(2) 관리감독자는 작업전 당일의 안전작업방법과 유해위험요인 등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험예지활동(TBM: Tool Box Meeting)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감독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> 위험예지활동(TBM: Tool Box Meeting)

- (3)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(보통작업 150 럭스 이상) 하여야 한다
- (4) 자재를 반입 및 반출 시 전동 지게차, 핸드 파레트 트럭(Hand Pallet Truck) 등을 이용하고 인력 운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






<그림 3> 운반용 장비

(5) 벽체, 천장 작업 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 등 떨어짐(추락)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퀴고정장치, 아웃트리거, 승강용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4> 이동식 비계

- (6) 작업 전에 근로자 이동통로, 자재보관장소 및 운반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,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·정돈하여야 한다.
- (7) 전기기계·기구 사용 시 누전, 합선, 과부하 등에 의한 감전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핸드그라인더, 조명 등 전기기계·기구 사용 시,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전원을 인출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5> 가설 분전반

- (9) 핸드그라인더 및 절단기 커버 등의 방호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10) 고속절단기 사용 시 안전덮개 설치 및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1) 안전모, 안전대, 보안면,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12) 자재운반 작업 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무게의 적정성이 유지 (남자 20~30kgf, 여자 10~15kgf이하)되어야 하며, 5kgf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취급 물품에 대하여 작업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13) 작업높이에 따라 적합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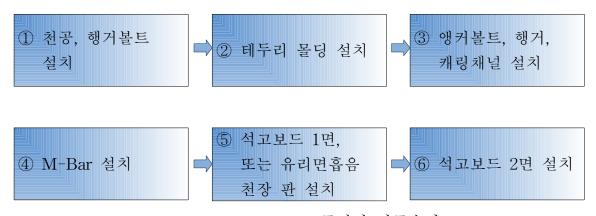
- (14) 떨어짐(추락)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 등 떨어짐(추락)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5) 작업 종료 후 작업발판과 잔여자재에 대하여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시행한다.
- (16) 화재의 위험이 있은 장소에는 소화기, 방화수 등을 비치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<그림 6> 소방기구

#### 6. 천장공사 안전관리사항

(1) 경량철골 천장공사 중 M-Bar 공법의 시공순서는 <표 1>과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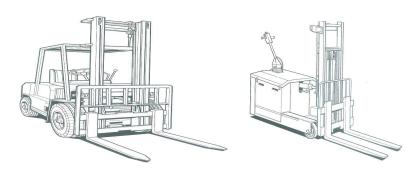
<표 1> M-Bar 공법의 시공순서

(2) 천장공사 시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사항

#### (가) 자재운반

① 자재운반 시 작업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 그 밖의 작업 통로 설치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G-85-2015)에 따른다.

② 지게차 운반 시에는 급작스런 제동 및 방향전환을 금지하고, 운전원은 운행 경로 및 주변을 주시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지게차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DIE M-185-2015)에 따른다.



<그림 7> 산업용 카운터 발란스 지게차 및 보행 작동용 지게차

#### (나) 작업발판 설치 작업





<그림 8> 작업발판 설치

천장 작업 시 작업발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① 천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
- ② 떨어짐(추락)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은 안전난간 등 떨어짐(추락)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작업발판 승하강용 통로의 답단의 높이는 25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층고가 높은 천장의 경우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,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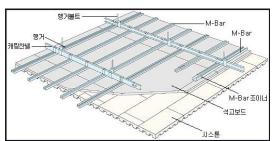
- (다) 슬라브(Slab)에 인서트(Insert) 매립작업
- ① 화약을 사용하는 타정총은 사전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타정총의 낙하격발안전장치, 방아쇠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오발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③ 타정총의 상향작업 시 수직(직각)을 유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 등의 상향 작업 시에는 안전모, 보안면,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.



<그림 9> 드릴 등 사용한 상향 작업

- (라) 캐링채널(Carrying Channel), M-Bar 설치작업
  - 달대 볼트 설치→ 캐링채널 설치→ M-Bar 설치





<그림 10> M-Bar 설치 상세도

- ① 캐링채널(Carrying Channel), M-Bar 설치 시, 날카로운 부위에 인한 자상(刺傷) 등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② 단부 작업 시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의 끝부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떨어짐(추락), 발빠짐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
#### (마) 천장재 설치작업

- ① 전동공구,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절연상태 및 분전반을 점검하여 감전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② 타정총의 낙하격발 안전장치, 방아쇠 안전장치, 밀착압력 안전장치 등 안전 장치를 작업전에 점검하고 안전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

<그림 11> 천장재 설치

# 7. 벽체공사 안전관리사항

(1) 벽체공사 시공순서는 <표 2>와 같다.



<표 2> 벽체공사 시공순서

#### (2) 벽체공사 시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사항

#### (가) 작업 전 준비 사항

① 건설용 리프트, 이삿짐운반용 리프트, 이동식크레인 등 작업에 적정한 양중 장비를 선정하여 자재 및 부재의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C - 66 - 2016

- ② 자재 소운반 시에는 부재별 형상에 적합한 소운반 장비를 선정하고 사용하여야 하며, 인력운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③ 작업장 및 통로 주변 개구부의 안전난간, 덮개 등 방호시설 설치 여부와 통로의 바닥 상태 등을 확인하고,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④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관리, 유기용제 사용 및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보건 대책,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말비계(간이작업대)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떨어짐(추락)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사용 금지
-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, 전도 예방조치 실시.







<그림 12> 말비계

⑥ 타정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3> 런너(Runner) 고정용 타정총

- ⑦ 타정총(화약총)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☞ 타정총 등 화약을 사용하는 공구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.
- 따 타정총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, 이동시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.

- 라 타정총의 낙하격발 안전장치, 방아쇠 안전장치, 밀착압력 안전장치 등안전 장치를 작업 전에 점검하고 안전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① 절단기 사용 시에는 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준수하고, 방호장치 (안전커버)의 부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⑧ 절단기 사용 시에 불티 비산방지 시설 설치, 방화 매트 깔기, 소화기 및 방화수 비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⑨ 근로자는 작업 시에 안전모, 안전화, 방진마스크, 보안면, 귀마개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나) 먹메김 및 단열재, 석고보드 설치
- ① 먹메김 작업 시 개구부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핀 제거 시 비산물에 의한 눈 손상이 발생 가능하므로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③ 접착제 혼합 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교반기(Mixer) 접지 및 절연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.
- ④ 단열재 절단 시 칼에 의해 손가락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하는 등 대비 하여야 한다.
- ⑤ 석고보드 재료에 따라 마스크, 보안면,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14> 단열재 설치

C - 66 - 2016

(다) 경량벽체 설치 순서

먹메김 → 상하부 런너(Runner) 설치 → 스터드(Stud) 설치
→ 1면 석고보드 부착 → 단열재 취부 → 2면 석고보드 부착





<그림 15> 상하부 런너(Runner) 및 스터드(Stud) 설치

- ① 작업발판(말비계) 사용 시 폭 40cm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총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사전에 교육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전동공구,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절연상태 및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와 접지 상태를 점검하고, 방호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용접 및 절단작업 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가연물·인화물 제거, 불티 비산방지설비 설치, 소화기 비치 등을 하여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절단작업 시 칩 비산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면을 착용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16> 용접 및 절단작업

- ⑥ 석고보드 절단 시 공구에 의해 손가락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하는 등 대비하여야 한다.
- (라) 그 밖의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은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(KOSHA GUIDE C-17-2011)을 참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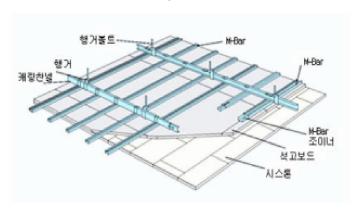
<부록> 경량 천장 틀 종류

### 1. M-Bar 천장틀

(1) 구성: M-Bar+석고보드+흡음텍스

(2) 마감: 석고 보드, AL천장판. 아연도 강판, 유리면 흡음판 등

(3) 특징 : 마감재 선택이 자유롭고, M-Bar가 보이지 않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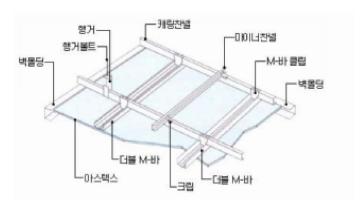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M-Bar 천장 틀

# 2. 더블M-Bar 천장틀

(1) 구성 : 더블M-Bar+흡음텍스

(2) 마감 : 석고 보드, AL 천장판. 아연도 강판, 유리면 흡음판 등

(3) 특징 : 마감재 선택이 자유롭고, M-Bar가 보이지 않음.



<그림 2> 더블M-Bar 천장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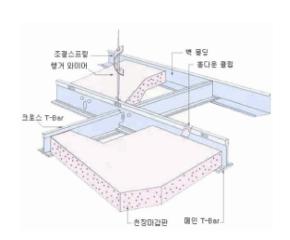
# 3. T-Bar 천장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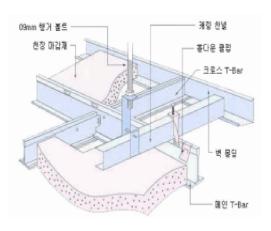
(1) 구성: T-Bar+천장재

(2) 마감 : 유리면 흡음판 등

(3) 특징 : 천장틀에 천장재를 올려놓는 타입으로 시공이 간편하고

천장 판이 점검구 역할을 한다.





<그림 3> T-Bar 천장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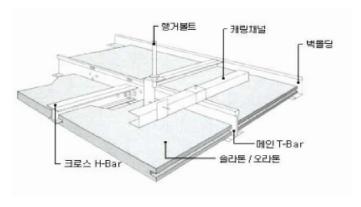
# 4. TH-Bar 천장틀

(1) 구성: TH-Bar+천장재

(2) 마감 : 유리면 흡음판 등

(3) 특징 : 천장틀에 천장재를 올려놓는 타입으로 시공이 간편하고

천장 판이 점검구 역할을 한다.



<그림 4> TH-Bar 천장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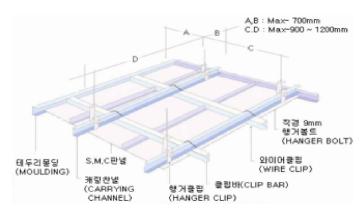
# 5. CLIP-Bar+천장틀

(1) 구성 : CLIP-Bar+천장재

(2) 마감 : AL 천장판, 강재 천장판 등

(3) 특징 : 천장틀에 CLIP을 이용하여 끼워 넣는 타입으로 시공이 편하고

천장판이 점검구 역할을 한다.



<그림 5> CLIP-Bar+천장틀